

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(현장별보증)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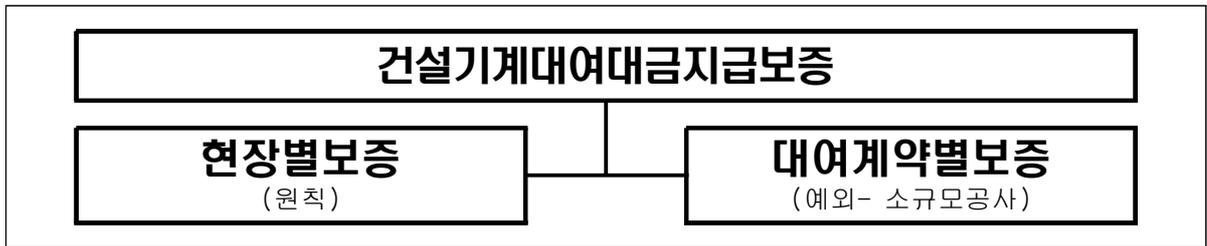
1 현장별보증 도입

○ 2019년 6월 19일부터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(현장별보증)*이 새롭게 도입됩니다.

* 2019.6.19.부터 체결되는 (하)도급계약전에 대해 적용됩니다.

○ 조합원은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현장별보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다만, 소규모공사의 경우 기존처럼 대여계약별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
2 현장별보증 개념

○ 현장별보증이란 조합원이 시공하는 1개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보증합니다.

○ 현장별보증서 발급 후 개별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.

○ 조합은 제출된 건설기계대여계약서에 대해 보증채권자로 확인한 것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.

○ 현장별보증과 대여계약별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 분	현 장 별 보 증	대여계약별보증
보증대상	현장의 모든 건설기계	각각의 개별 건설기계
보증발급	현장별로 1장 발급	대여계약별로 개별 발급
제출시기	착공 전 1회 제출	대여계약서 체결 후 건별 제출
보 상	현장의 모든 건설기계	각각의 개별 건설기계

3

현장별보증 주요내용

구 분	주 요 내 용	
보 증 금 액 산 정	구 분	보 증 금 액
	공사기간 4월이하	공사계약금액×업종별 건설기계비율-대여계약 선급금 합계
	공사기간 4월초과	$\frac{\text{공사계약금액} \times \text{업종별 건설기계비율} - \text{대여계약 선급금}}{\text{공사기간(월)}} \times 4$
보 증 기 간	착공일로부터 ~ 준공일 + 90일	
기 본 요 율	(현장별보증) 연 1.61 (대여계약별보증) 연 1.33	
대여업자통보	(통보기능 강화) 카카오페이 모바일등기로 통보 원칙	
제 출 서 류	보증신청서(인터넷), 업무약정서(인터넷), 도급계약서, 국제납세증명서 등	

4

현장별보증 예외 대상(대여계약별보증)

구 분	내 용
원도급	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
하도급	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
공 통	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

5

보증채권자 확정

구 분	내 용
1	[조합원 or 대여업자] 조합 인터넷창구에 대여계약서 제출 ※ 조합 인터넷창구의 대여업자 등록 또는 개인정보동의서 서면제출 필요
2	[조합원] 대여업자가 제출한 대여계약서 확인(조합원제출시 생략)
3	[조 합] 대여계약서 심사 및 보증채권자 확정 및 홈페이지 게시
4	[조 합] 대여업자에게 확정사실 or 미확정사실 통보

※ 대여계약서 제출관련 시스템은 첨부파일 참조